

# 법 무 부

## 출 국 관 리 과

(TEL : 503-0941, FAX : 503-7104)

2005. 10. 4.(화)

아래 문건을 수신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신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강혜영님

발 신 : 법무부 출국관리과 공존행

제 목 :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 송부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 관련 난민업무처리지침을 붙임  
으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5매 (표지포함)

“법무행정혁신비전-인간존중의 법질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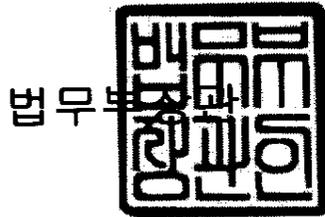
# 법무부

수신자 함께하는 시민행동 강혜영 귀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자료 송부

2005. 4. 27.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1부. 끝.



수신자



계장	<i>공준하</i>	사무관	<i>김찬근</i>	과장	<i>최동우</i>	전결 10/04
----	------------	-----	------------	----	------------	----------

협조자

시행 출국관리과-12579 (2005.10.04. ) 접수 ( )  
 우 427-720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 / <http://www.moj.go.kr>  
 전화 02-2110-3464 전송 02-503-7104 / [jonhaeng@moj.go.kr](mailto:jonhaeng@moj.go.kr) / 공개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2002. 4.

법 무 부  
출입국관리국

#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 1. 난민의 정의

###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2》

“難民”이라 함은 難民의 지위에 관한 協約(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議定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難民”이라 함은 1951. 1. 1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서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 때문에,  
·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스스로 받지 않는 자  
· 거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이전에 거주하였던 국가 밖에 있으면서 그 국가에 돌아갈 수 없거나 그 공포 때문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難民”이라 함은  
· 난민협약 제1조의 “1951.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말을 삭제할 경우 난민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시간적제한 해제)  
·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지리적 제한 해제)

## 2. 난민임시상륙허가

### 가. 난민임시상륙허가 신청

#### 가) 신청인 자격

- 항공기·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협약 제1조 A항(2)호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자(법 제1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A항(2)호)
-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신청 허용
  -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나) 신청 접수기관

타고온 항공기·선박 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하“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상륙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다) 신청시 제출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규칙 별지제30호의3 서식)
- 소명자료(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
- 얼굴사진(35×45mm) 1장

### 나. 허가요건

상륙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6조의2 제1항)

※ 난민인정, 난민인정 불허 또는 난민인정 취소 기준을 참고

## 다. 허가절차

(법 제16조의2 제1항)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과 허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허가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상륙허가를 승인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
  - 《승인시 붙이는 조건》
    - 허가기간 : 30일의 기간 부여
    - 거 소 : 난민보호시설 기타 장소 지정
    - 행동범위 : 특별한 경우 행동범위 제한
    - 기 타 : 필요한 조건을 붙임
  - ※ 불허할 경우에도 그 불허 결정사실 및 불허이유 통보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허가의 경우 신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규칙 별지제30호의4 서식)를 발급, 불허경우에는 불허통지와 함께 출국 조치함
-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발급대장(규칙 별지제30호의5 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라. (삭제)

## 마. (삭제)

## 바. 기간 연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난민 인정신청을 하고 그 상륙허가기간 내에 난민인정 여부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상륙허가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때에는 난민상륙 허가연장신청서(규칙 별지제30호의3 서식)를 제출받아 상륙허가기간을 연장 허가함

- 1회연장 허가기간은 상륙 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함(필요시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반복 허가)

### 사. 허가서 회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회수함

- 상륙허가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된 때
- 상륙허가자가 난민인정 불허 결정 또는 제3국의 입국허가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때

## 3. 난민인정

### 가. 난민인정 업무의 개시

- 난민인정 업무는 상륙 또는 입국하여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때에 개시됨
-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하는 경우는 난민인정 업무의 전단계 업무임

### 나. 신청

난민인정 신청은 ㉠자격있는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신청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가) 신청인 자격

- 스스로가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어야 함(법 제76조의2 제1항)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상륙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을 말함
  - “6-나(난민에 대한 특례)”의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함

-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 신청 허용
  -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나) 신청 기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법 제76조의2 제2항)

- 상륙 또는 입국한 날
  - 상륙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받은 날을 말함
-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로 일반인들이 주지한 사실은 알게 된 것으로 봄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 교통사고 등의 사고 또는 질병 및 박해의 후유증으로 1년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자
    -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다) 신청서류(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 난민인정신청서 (규칙 별지제126호의3 서식)
-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스스로가 난민임을 주장하는 진술서
  -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문기사, 국제사면위원회 발행 인권보고서 등)
- 얼굴사진(35×45mm) 2장
- 여권 또는 선원수첩 (제시 및 사본 1부 제출)
  -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유서 제출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기타 신분증명서 등 첨부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제시)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증 (제시)
  - 등록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라) 신청 접수기관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접수함

다. (삭제)

라. (삭제)

마. 심사 및 결정

가) 난민인정 대상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에 해당하는 난민

-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 때문에
  - ㉡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공포 때문에 스스로 그 보호를 받으려 하지 않는 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민으로 소속한 국가를 말하며 2 이상인 경우도 있음)
- ㉣ 국적이 없고,
  - ㉤ 이전에 거주하였던 국가 밖에 있으면서,
  - ㉥ 그 국가에 돌아갈 수 없거나, 그 공포 때문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 자

나) (삭제)

다) 난민인정 등의 협의 요구

(시행규칙 제67조의2 제1항, 제67조의7 제1항)

법무부장관은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 난민인정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난민인정실무협의회 또는 난민인정협의회에 협의를 요구함

① 난민인정실무협의회 협의

(시행규칙 제67조의4 제5항, 제67조의5, 제67조의7 제1항)

- 실무협의회는 그 협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참고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실무협의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음
- 실무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난민인정불허
  - 난민인정 하기로 의결하거나 난민인정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사안에 대한 난민인정협의회 협의 요청

② 난민인정협의회의 협의

(시행규칙 제67조의3, 제67조의4제5항, 제67조의5)

- 난민인정협의회는 그 협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난민인정협의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음
- 난민인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난민인정 또는 인정불허
  - 이의신청이 이유있음 또는 이유없음

라)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여부 심사·결정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난민인정신청인에 대한 면접이나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아니

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 그 보고를 참고할 수 있음

(법 제80조 제2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78조)
  -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됨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음(시행령 제88조의2 제5항)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협의내용을 참고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함

#### 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 통지

(법 제7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88조의2 제6항 및 제7항, 제88조의4 제4항)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여부 등을 심사·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신청받은 사무소장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난민임을 인정한 경우 :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 난민인정을 불허한 경우 : 난민인정불허통지서 교부
  -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 : 그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 난민인정 취소처분을 취소
  -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교부
-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규칙 별지 제126호의5 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사. (삭제)

#### 아. (삭제)

## 자. 난민인정 취소

(법 제76조의3, 시행령 제88조의3)

### 가. 취소 대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 제76조의 3, 난민협약 제1조 C항 (1) 내지 (6), F항 a 내지 c)

-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자
- ②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그 국적을 다시 취득한 자
- ③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누리는 자
- ④ 박해의 공포 때문에 떠났거나 그 밖에서 머물던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
- ⑤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는 자
- ⑥ 국적은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이전에 거주하였던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
- ⑦ 다음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자
  - 그 범죄에 관하여 작성한 국제문서에 규정된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인륜에 반한 범죄
  - 난민으로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피난국 밖에서 범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범죄

### 나. 사실조사

(법 제80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취소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 그 보고를 참고할 수 있음

### 다. 취소통지

(법 제7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88조의 3)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난민인정취소통지서”(규칙 별지제126호의7 서식)로 그 외국인에게 통지함
-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증명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

## 차. (삭제)

## 카.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 요건 및 절차

(법 제76조의4)

- 난민인정 불허통지 또는 난민인정 취소통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제출한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나) 이의신청 서류 송부

(시행령 제88조의4 제2항)

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류에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다)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시행령 제88조의4 제3항, 시행규칙 제67조의3)

- 법무부장관은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협의회에 협의를 요구함
-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난민인정협의회의 협의내용을 참고로 함
-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은 이의신청에대한심사결정서(규칙 별지제126의9 서식)로 함

### 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조치

(시행령 제88조의4 제4항)

- ① “이유있음”으로 결정한 경우

- 난민인정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사무소장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
- 난민인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 회수한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반환
- ② “이유없음”으로 결정한 경우
  - 위의 “아.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출국권고절차)”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 4. 난민여행증명서

##### 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목적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국외여행이나 타국에의 이주를 자유롭게 하여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난민협약 제28조)

##### 나. 발급대상

(법 제76조의5 제1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급하지 않음

##### 다. 발급시기

(법 제76조의 5 제1항)

발급 대상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발급신청을 한 때

##### 라. 발급절차

(시행령 제88조의 5)

- 발급 신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규칙 별지제126호의11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얼굴사진 (35×45mm) 2장

- 사무소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 보고서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7조의10)

#### 마. 효력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임 (법 제76조의5 제2항)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이상 1년 미만으로 재입국기간을 한정할 수 있음 (법 제76조의5 제4항)
- 명의인은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은 재입국허가없이 언제든지 출입국할 수 있음 (법 제7조 제2항 제4호, 법 제76조의5 제3항)